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2
----------	-----

2015년 6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자구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정비
- 시장의 고유권한 제한, 지방공기업법 해석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불

합리한 규정 정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조문의 정비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수도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3.20 ~ 4.8)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급수구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규정” 삭제(안 제2조)

- 현행 조례에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 공익상 급수하거나 관할구역 내의 구역에 천재지변 등에 따라 비상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법」 제40조(관할구역 외의 급수) 및 제41조(긴급 급수 지원)에는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시 긴급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급자 위주의 규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공익 및 긴급 급수 취지에 맞게 행정규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의 급수구역(범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규정을 삭제('09.9.30 개정) 하였고, 부산시 등 타 광역시의 관련 조례에서도 수도(공업용수도) 급수구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에서도 시의회

의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의 조직 및 인사권 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6조)

- 관리자(상수도사업본부장)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권과 인사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3) “기업관리 규정 제정 시 시장 승인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관리 규정 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15.4.14)”에 따른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업관리 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4) “예산의 탄력규정” 삭제(안 제15조)

-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수입금 마련지출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5조에서는 “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에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등 수

입금 마련지출의 조건으로 상위법령에 없는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기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규정 정비

-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안 제7조)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 순서 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안 제16조)하며,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대하여 관련 법 조항¹⁾을 명시(안 제17조)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6) 용어 정비 등

- “급수장치”를 “급수설비”, “건설적립금”을 “건설개량적립금”,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계리”를 “회계처리”, “당해연도”를 “해당연도”, “법 규정에 의하여”를 “법에 따라”로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오타 수정²⁾ 및 띄어쓰기³⁾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1) 「지방공기업법」 제39조

2) 급부에 → 급수에, 운영 → 운용, ...

3) 수도사업 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각호의 → 각 호의, ...

관계 법령

「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수도사업의 설치)”를“(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청 할”을 “요청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의 보고)”를“(회계처리 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중 “이 조례시행”을 “조례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 ----- -----.</p>
<p>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제3조(급수구역) 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p>	<p>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어야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수용수도 사업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삭 제〉

제5조(조직) -----

-- 범위 내-----
----- 시장-----
-----.

〈삭 제〉

제6조(인사) -----

----- 요청할 -----.

〈삭 제〉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 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 과 실
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
회계 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서울특별시 일반회
계 나 다른 특별회계 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도사업 특별
회계 에 대하여 출자 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
행투자 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전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을 받을
경우 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의 출
자금 으로 계리 한다.

③ 전항의 출자금 에 대하여 는 그
출자 로 인하여 자산 이 취득 되 거나
그 사업 이 수익 을 얻 게 될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 을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특
별회계 의 납부 하 거나 출자 금 계정
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부 적립 을 위한 금액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 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 과 실
제 공급가격 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
회계 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나
다른 특별회계 는 수도사업 특별회
계 에 출자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
행투자 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을 하
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제1항 각
호 에 따라-----
----- 또-----

----- 회계 처리 한다.

③ 제2항 에 따른 출자금 으로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해당 사업 에서 수익
을 얻 게 될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
2항 에 따라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에 이익 금 을 납부 하
거나 출자 금 계정 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 제3항 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

----- 당해
-----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
----- 따라 -----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 다른 특별
회계는 -----
-----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

1. 비상재해 등 -----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

<삭 제>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에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1.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분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 3.~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회계처리 상황 -----

----- 각 호 -----
-----.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조례 시행-----
-----.